

서 평

慎鏞廬, 2001, 『獨島領有權에 대한 日本主張 批判』, 서울대학교출판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논리

최장근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연구원

|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타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1962년부터는 아예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고유영토인 타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령 타케시마가 한국에게 불법으로 점령당하고 있으므로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고유영토인 타케시마의 회복방법은 먼저 한국의 타케시마 불법점령을 공론화한 후에 일본영토에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공론화방법은 고유영토 타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것이다.

즉, (1) 한국의 고유영토를 입증하는 역사성을 왜곡해석하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본영토로서의 역사성을 확보한다. (2)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고하여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3) 독도영유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영해 및 EEZ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영유권 회복에 유리한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4) 국제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세계대백과사전, 세계지도 및 지리, 관광책자 등을 통하여 일본영토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인다. 이렇게 하여 일본령 타케시마가 국제사회의 인식으로 공론화 되면, 최종적으로는 공공연히 타케시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영토화정책에 대해 한국정부는 진정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주권수호 의지가 있다면 일본의 독도 영토화정책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2)(3)(4)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고, (4)는 국민운동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3)은 역사가가

담당해야 할 뜻이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에 입각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해 독도의 고유영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사료로 역사성을 입증함으로써, 일본의 타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철저히 반박한 대표적인 독도연구서이다.

일찍이 유럽팽창주의는 영토취득을 합법화하기 위해 (1) 무주지 선점, (2) 실효적 점유(일정한 기간 점유로 권원 발생), (3) 조약체결에 의한 영토할양 (4) 침부(자연적인 지형의 변화에 의한 영토이전), (5) 정복(무력사용에 의한 영토취득) 등 5가지의 영유권획득방법을 만들었다(이한기, 1969: 63-64). 일본은 일본령 타케시마의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고 있다. 즉, 원래 주인 없는 섬을 일본이 처음으로 발견하여 타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영유권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내세우는 가장 주요한 근거로 1905년 시마네(島根) 현 편입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에 관해서 본서의 논증으로 조명해 보기로 한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영유권분쟁은 메이지(明治)정부수립이후 일본의 영토확장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이들 영유권분쟁지역은 모두 일본의 고유영토와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메이지정부 수립 이후 확장한 일본의 신영토로서 1945년 패전 이전까지는 영유권분쟁지역이 아니었다. 이들 지역 중에서 해양의 국경지대에 있는 작은 섬에 대해서는 메이지정부의 영토정책에 의해서 일방적 편입조치를 취했고, 약소국가의 영토에 대해서는 무력위협으로 조약체결을 강요했고, 때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동원하여 할양하는 방법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메이지일본의 영토확장정책은 서세 동진 하는 서양열강의 위협에 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서 부국강병 달성을 위한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이었다.

이러한 영토확장정책은 1945년 패전직전까지 주변 약소국의 편입 및 합병, 중국본토의 점령 및 분할, 동남아시아 점령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이 일본영토로 편입될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연합국의 대반격으로 일본의 야심은 포츠담선언을 전적으로 수락함으로써 메이지초기 시점의 영토범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즉 일본은 포츠담선언에 의해서 메이지정부설립이후 꾸준히 확장해 왔던 광범위한 지역을 일본영토에서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메이지신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일본에는 영유권분쟁지역은 없었다.¹⁾ 그러나 일본의 영토확장은 메이지정부의 대외정책방침으로 설정되어 주변지역을 서서히 일본영토에 편입해 갔다. 결국 일본의 패전으로 메이지정부 수립 이후 확장한 지역은 포츠담선언을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본영토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실제로 패전 이후 포츠담선언에 입각하여 영토분리가 이행된 곳은 대만, 중국(만주), 한국(한반도) 등 독립의 의지가 강했거나, 주권의 실체가 분명한 지역에 한정되었다. 그렇지 않았던 지역은 일본영토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유구(琉球: 현 오키나와), 아이누모시리(현 北海道), 오가사하라(小笠原)섬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현재 일본과 분쟁지역인 일본북변국경지대(북변 4개섬), 독도, 조어도에 대해서는 메이지정부 설립 이후에 편입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일강화조약에서 연합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여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지 않고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 애매하게 처리했다. 특히 아이누모시리지역은 러일 두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고(최장근, 2003b), 유구는 일본의 무력위협으로 강제 편입된 지역이다(河野康子,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여 이를 지역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사실 지금 지적한 이들 지역 모두가 국제법을 무시한 정치적 조치의 산물로서 영토분쟁 및 민족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주범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이다. 미소진영에 의한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일본의 입장은 두둔한 결과이다. 원칙적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은 포츠담선언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토조항을 설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했어야 했다. 결국 국제법의 원칙을 무시한 연합국 측의 정치적인 담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영유권분쟁을 야기했던 것이다(渡辺昭夫·宮里政玄 編, 1986).

전후일본의 영토인식에는 연합국에 의해서 메이지 이후 꾸준히 확장한 영토를 박탈당했다고 하는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영토화의 가능성은 내재하고 있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영토화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는 단적인 예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과정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포츠담선언에 의해서 분리되어야 할 지역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지하는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일본은 유구, 아이누모시리의 홋카이도(北海道), 오가사하라도를 확보했고, 또 북변 4개섬, 독도, 조어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위까지 확보

1) 사할린 섬에 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향후 서로 합의로 영토를 결정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으므로 일방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분쟁지역과는 다소 다른 성질의 것이다.

하게 되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영토분쟁은 국제법에 의해서 해결되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조약도 그러했듯이 몇몇 영토분쟁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때 국제법은 정치적 타협의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그 역할을 마치게 된다. 일본영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메이지정부 설립 이후 일본이 확장한 모든 영토는 전쟁 또는 무력위협에 의한 조약체결이라는 정치적인 형태로 편입된 것이다. 단 한번도 국제법에 입각하여 영토편입을 단행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영토인식에는 국제법적인 영토개념이 결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분쟁중인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전전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영토주권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최장근, 2000a; 2000b). 즉 다시 말하면 근대이후 확보한 모든 영토가 역사적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정치적인 조치였다. 이처럼, 근대이후 영토결정 조건인 역사성, 국제법, 실효적 점유에 의거하여 영토를 취득한 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에 현재 주변국과 영유분쟁 중에 있는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토인식은 우선적으로 영토확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관계는 영토확보라는 강한 집착 때문에 독단적인 해석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되어 그 자체는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은 전통적인 영토인식으로 인하여 포츠담선언의 전면적인 수용으로 박탈당한 전전에 확정한 지역에 대해서도 영유권 회복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본서의 구성은 「제1장 일본 측의 ‘獨島가 日本固有領土이라는 주장’에 대한批判」, 「제2장 일본 德川幕府政權의 ‘獨島가 日本固有領土가 아니고 朝鮮領土’라는 再確認 判定과 安龍福의 활동」, 「제3장 일본 측의 ‘明治新政府는 日本領土로 認定했다’는 주장에 대한批判」, 「제4장 일본 측의 ‘獨島의 1905년 領土編入이 合法的이고 正當하다’는 주장에 대한批判」, 「제5장 일본 측의 ‘獨島領土編入의 지방관청 島根縣 공시가 정당했다’는 주장에 대한批判」, 「제6장 大韓帝國이 일본의 獨島編入에 대해 전혀 抗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批判」, 「제7장 일본 측의 ‘1945년 패전으로 반환된 領土 속에 1905년에 편입한 領土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批判」, 「제8장 일본 측의 ‘聯合國最高司令部指令(SCAPIN)제677호는 일본의 領土規定 또는 最終的 領土規定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批判」, 「제9장 일본 측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에서는 獨島를 韓國領土에서 除外시킴으로써 獨島가 日本領土임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批判」, 「제10장 일본 측의 ‘獨島領有權論爭을 國際司法裁判所에 審判을 받자’는 제의에 대한 批判」 등으로 되어 있다.

즉 이러한 시대별 구성으로 반박하는 본서의 강점은 일본의 타케시마 고유영토론 주장의 모순성을 지적하는데 매우 유효했다.

위의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전통적인 영토인식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도 영토확보를 위한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확보를 위해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 6가지로 요약 정리된다.

1. 「타케시마」는 역사성을 가진 일본의 고유영토이다.”

일본은 역사성에 입각한 한국의 고유영토론을 부정하고 있다. 즉 1905년 일본이 타케시마를 편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경영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지리지」에 등장하는 삼봉도, 우산도, 석도 등은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17세기 일본주민이 막부(幕府)로부터 도해면허증을 허가받아 어업에 종사하여 타케시마를 경영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신용하교수는 한국 고유영토로서의 역사성을 철저히 논증한 후, 일본주장의 도해면허증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도해면허증은 원래 영유권을 의미하는 근거가 아니라 외국에 나갈 때 막부의 허가받은 면허증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도해면허증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 근거라고 논증하고 있다. 사실 근세일본은 막번체제 하에 쇄국을 단행하여 나가사키(長崎)를 통한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단, 일부 번(藩)에 한해서는 막부의 허가를 받아 주변 관계국에 나가서 일정한 교역을 허가하고 있었다. 막부의 도해면허증은 이국 이역에 대한 도향허가증으로 어업과 관련되는 경제문제(정치문제가 아님)이다.²⁾

그리고 신용하교수는 17세기 말 대마도주의 울릉도 및 독도영유권 제기론에 대해서 논증하여 조선조정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고증했다. 또 안용복 활약으로 막부가 1696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료를 제시하여 논증하

2) 도해면허증은 막부가 마쓰마에(松前) 번에게 부여한 아이누모시이에의 교역권과 유사한 것으로 영토문제와는 관계없는 어업에 관련되는 경제문제이다. 막부는 물론이고 마쓰마에 번은 아이누 모시리에서의 교역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이누모시리를 이역(異域), 이민족(異民族)으로 간주했다(최장근, 2003b).

고 있다. 즉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로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논증했다. 게다가 일본은 타케시마 편입 이전에 메이지정부의 내무성, 외무성, 해군성 및 육군성 그리고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 조차도 공문서를 통하여 전적으로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했다고 사료를 통하여 고증했다.

이처럼, 사료에서 영토편입당시의 메이지정부 조차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유권확보에 집착하여 다양한 사료에서 입증되는 한국의 역사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독단적 사료해석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영토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이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는 것은 타케시마영유권 확보를 위해 1905년 편입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2. 「타케시마」는 1905년 2월 22일 무주지 선점으로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된 것이다.”

신용하교수는 도해면허증이 부정됨으로써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를 편입조치 할 시점에 일본이 독도를 경영했다는 사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메이지정부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료를 통하여 논증했다. 또 당시 독도 대여권을 제출한 일본 어업가(中井養三郎)는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해군성은 러일전쟁용으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무주지설 조작을 요구했다. 1905년 일본의 시마네 현 편입조치는 일본내각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무주지 선점의 주장은 허구임을 논증했다.

일본은 독도편입당시 중앙정부고지가 아닌 지방 현청 관내에 고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조선정부의 반발을 우려하여 국제사회 및 조선에 알리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은밀히 국외에 통보 없이 취한 국내적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영토편입조치에 합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여 일본의 독도 시마네 현 편입의 문제점과 기만함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영토편입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외교권피탈, 통감부설치 이후에 간접적으로 조선에 알려왔다. 대한제국의 중앙정부는 울릉군수 심홍택의 보고를 받고 항의지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신문과 재야지식인들도 한 목소리로 항의논조를 내어 일본의 독도불법침탈을 비난했다는 사료를 제시했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 조치할 때 조선조정이 묵인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사료를 제시하여, 이를 조금도 방관하지 않았음을 물론이고 일본의 독도침탈을 인정한 적이 없었음을 논증했다.

3. 「타케시마」는 한일합병으로 편입된 영토가 아닌, 일본 고유영토이므로 포츠담선언에 의해서 분리되는 지역에서 제외된다.”

1905년 2월에 행해진 일본의 타케시마 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를 강요했으나 조선의 외교권 장악에 실패한 뒤, 「한일협약(1차)」 및 을사조약(1905년 11월)을 강제하여 한창 외교권을 강탈하려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러한 조선침략의 여세를 몰아 급기야 일방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독도를 타케시마로 편입 조치한 것이다.

이처럼 메이지정부 수립 이후 무력으로 확장한 영토는 패전 이후 포츠담선언의 이행으로 한국영토에 반환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일본은 타케시마 편입조치만큼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 조치론을 내세워 조선으로부터 약탈한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용하고 교수는 이러한 일본의 고유영토론에 대해 1905년 일본의 타케시마편입 당시, 일본정부 및 일본어민들 조차도 독도가 조선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면서 일본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타케시마를 편입조치 한 후, 1910년 조선(한반도)을 일본에 합병했으나,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영토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 합병과 독도 편입은 방법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를 모두 일본이 조선에서 약탈해간 영토이다. 그러므로 해방한국은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당연히 한국영토로 반환되어졌다고 여겼다. 이러한 인식 아래, 해방 후 동해안 한국어민들은 독도 근해에서도 당연히 어로에 종사해 왔다. 당시 일본은 한국어민의 독도주변 어로활동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은 패전직후 연합국의 일본점령시기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로 보아,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에 의거하여 독도가 당연히 한국에 반환된 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타케시마 영유권주장 또는 영유에 대한 의사표시조차도 전혀 제의 받은 적이 없었다.³⁾

만약 독도가 일본의 움직일 수 없는 고유영토였다면, 패전 직후부터 대일강화조약 체결까지 줄곧 타케시마의 영유권회복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가 아님이 증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토인식이 1905년 타케시마 편입조치의 정당성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의사 표시는 1952년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미소중심의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연합국의 중심 국가인 미국이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대일강화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일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었다. 일본은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고 고래부터 조선영토였다는 확고부동한 다양한 사료가 혼존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해석 및 일방적인 주장으로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4. “점령기에도 연합국은 「타케시마」를 일본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 일본은 연합국의 일본 점령기에 한번도 한국어민들의 독도주변어로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한 적이 없었다. 한국은 해방 이후 당연히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인식하고 어업에 종사했다. 한국어민들이 독도근해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중 미군의 오펙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를 보더라도 한국어민들은 해방 후 한반도와 더불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연합국최고사령부(GHQ)는 맥아더 라인을 선포하여 독도근해를 일본 어업권에서 배제했다. 따라서 GHQ는 독도주변해역을 일본관할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 일본도 독도에 대한 영유인식은 GHQ와 동일하여, 1945년 패전 이후 대일강화조약 체결 이전에는 조선의 어로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한국의 독도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한 적이 없었다. 단, GHQ가 맥아더라인을 선포하여 일본의 어업권을 제한하자, 이에 대해 어업권 확장 차원에서 맥아더라인의 확장을 요청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독도주변어로 행위에 대한 이의제기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미소냉정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의 일본 편들기에 편승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毎日新聞社 編, 1952). 일본은 이때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연합국은 이때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

신용하고수는 패전 후 일본의 포츠담선언 이행으로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에 의해서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과, 지도 및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여 전후 독도가 명백히 한국영토에 반환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연합국이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기 위해 1949-1950년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도 GHQ는 종래의 독도인식에 입각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규정한 사실도 사료를 통해 입증했다. 게다가 미국이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미국초안」을 작성하여 반환영토의 상한을 규정했는데, 그때 「일본의 영토의 한정은 (중략) 1894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제1조)」라는 사료를 제시하여 연합국의 독도인식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명명백백한 사료가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이 일본점령기에 독도를 일본영토 타케시마라고 간주하고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수 있다.

5.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타케시마」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합국측은 일본점령기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연합국은 대일강화조약의 영토조항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대일강화조약 영토조항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신용하교수는 연합국측이 점령기간 중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명기가 누락된 경위를 명쾌히 논증하고 있다.

초안작성과정에서 연합국측은 제1차에서 제5차 초안까지는 종래의 인식대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했었다. 그런데 제6차 초안에서는 갑자기 정반대로 독도 대신에 일본영토 타케시마라고 명기되었다. 그러더니 제7차부터 제9차 초안에서 는 독도 및 타케시마 언급 그 자체가 배제되었다(김병렬, 1998).

신용하교수는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언급하여,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 타케시마로 명기하려고 시도하다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의 영향력 있는 다른 연합국이 미국조치에 항의하여 당초 연합국이 합의한 대로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일본의 로비로 미국을 설득함으로써 미국이 영국 등의 다른 연합국과 조율하여 대일강화조약에서는 소속을 명기하지 않기로 결정해, 결국 독도는 애매모호하게 처리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신용하교수는 미국이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제6차 초안에 독도 대신에 일본령 타케시마를 명기하려다가 실패하고, 연합국의 합의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소속명기를 피했던 것이다. 이것은 SCAPIN 제677호의 효력 부활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공인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명백백한 한국영토였으므로 한국영토로 명기되어졌어야 마땅했다. 독도가 한국영토에서 배제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타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영토로 명기되려고 했던 것은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본은 한국이 조약 체결 당사자가 되는 것을 미국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막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 뒤, 조약체결 당사자가 된 일본은 적극적으로 타케시마영유권 확보를 위해 사방팔방으로 노력했다(김태천, 1999).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이 영유권확보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국의 고유영토론을 입증하는 역사성을 은폐하고 오히려 1905년 타케시마편입 조치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타케시마의 고유영토론을 인정받으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이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영유권을 명기하지 않았던 것은 미소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에서 기인된 결과이다.

6. “한국은 일본 고유영토 「타케시마」를 불법으로 군사점령하고 있다.”

일본은 미소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후원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합국 측의 항의로 독도를 일본령 타케시마로 명기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 및 타케시마 모두 빠진 것을 일본은 영토화의 가능성으로 보고 독도영토화에 기세를 높였다. 이승만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독도침탈 의도를 파악하고 대일강화조약 후 맥아더라인 철거상황을 고려하여 「평화선」을 선포했다. 이는 독도가 한국고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절차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의 독도침탈 의도는 평화선에 의해 사전에 차단되고 말았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조치라는 서한을 한국외무부에 보내어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항의했다. 독도가 명명백백한 일본 고유영토였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했을 것이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 인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외교 루트를 통하여 항의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왔다. 급기야 일본은 한일협정 때에는 경제지원을 대가로 의도했던 평화선을 철거하는데 성공했다 (김영진, 1998). 또 1999년 일본은 1994년에 협정된 200해리 국제해양법 질서를 내세워 한국정부에 대해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을 강요했다. 이때 일본은 한일양국 사이의 바다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중간수역을 만들어 여기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 문제는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외환위기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부득이 영토문제제외라는 전제조건 하에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고 말았다. 독도는 이처럼 국제조약으로 인해 조금씩 조금씩 영유권을 훼손당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익확보는 한국의 권익후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은 수상이 직접 나서서 예전과 달리 공공연히 타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미 독도의 영토주권이 상당부분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전의 일본은 한일관계를 고려하여 수상이나 장관 등 책임있는 요인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이젠 일본은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하지 않고 공공연히 한국이 일본영토 타케시마를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영유권 확보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듯하다. 이처럼 한국이 일본영토 타케시마를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일본은 1954년 9월 25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위임하자고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다. 물론 본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여 한국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한국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당연히 한국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손상시

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부한 한국정부의 자세를 지적하며 이를 호재로 삼아 한국을 공격해 왔다.

신용하교수는 독도가 명명백백한 한국영토임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자는 일본의 태도는 지극히 정치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IV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한국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 일본영토 타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국민 대다수의 인식일 것이다. 일본은 역사인식의 객관성에 대한 기준이 우리와 상당히 다른 것 같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독도에 대해서도 일부 몇몇 역사학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보수계의 선동으로 인해 독도를 일본영토 타케시마로 인식하고 있다.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의도는 타케시마의 영토주권을 확보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영토인식은 타케시마영유권 확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한일간의 우호관계 따위에는 그다지 관심 없다는 것이 국익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문화적 특성이기도 하다. 일본은 1945년 패전당시만 하더라도 타케시마영유권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1952년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미국이 미소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게 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인식이 생겨났다. 이를 기점으로 일본은 그 후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했다. 동시에 실제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혼란하는 국제조약을 요구해왔는데, 오늘날에는 심지어 한국이 일본영토 타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그것도 수상이 직접 나서서 주장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사실 일반적으로 영유권 결정에 있어서 고유영토주권을 결정짓는 역사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는 역사성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일본은 한국의 고유영토권을 입증하는 역사성에 대해 독단적인 해석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완전히 무시해왔다. 일본은 오히려 역사성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국제사회의 여론이 일본영토 타케시마로 인식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영토주권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그래서 일본은 월 새 없이 「일본해」(동해가 아닌)의 홍보와 더불어 한국영토 독도가 아닌, 일본영토 타케시마임을 선전

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것도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연하게 한국이 타케시마를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정부는 극성스런 일본의 타케시마영유권 주장으로 독도에 자국민의 입도(入島) 조차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고유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때마다, 일본은 여기에 항의하여 정말로 한국이 일본영토 타케시마를 점령하여 함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대대적인 항의와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관계가 극도로 냉각되어 외교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과거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다면, 독도의 고유영토 주권을 가장 철저히 수호했던 조치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한 「평화선」 조치였다. 이는 고유영토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었다. 결국 이 평화선도 일본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후퇴하여 박정희 정권은 평화선을 철회했고, 또 김대중 정권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채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독도의 지위를 아슬아슬 위태롭게 했다. 일본의 타케시마영유권 확대는 한국의 독도주권 훼손이다. 이러한 추세는 마치 독도의 비극의 그 날을 향해 디테이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신용하교수는 이러한 심정으로 일본의 타케시마영유권 주장의 논리를 철저히 반박하고 있다.

신용하교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인식 속에서 일본의 침략적인 독도에 대한 영토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한국정부 및 국민들의 국토수호 의지의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온 가슴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이미 일본은 독도침탈을 시도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은 이제 독도주권 수호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본서는 독도영유권에 관한 역사적인 근거를 객관적인 사료를 통해 비판한 논문으로써 아주 알기 쉽게 평이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의 역사성 결핍을 한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글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현》

- 김병렬. 1998.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연구보전협회. 『獨島領有權과 領海와 海洋主權』. 서울: 독도학회. pp.165-195.
- 김영진 역. 1998. 『검정 한일회담』. 서울: 清水書院.. 高崎宗司. 1996. 『檢定 韓日會談』. 岩波書店.
- 김태천. 1999. 「연합국에 의한 전후처리과정에 있어서 독도문제」. 『麗海金英球教授 華甲紀念論文集』. 서울: 麗海金英球教授 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pp.192-220.

- 김학준. 1998.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원상 복구시킨 연합국의 결정과정」. 『獨島領有의 歷史와 國際關係』. 서울: 독도학회. pp.189-216.
- 민족문제연구소 편. 1995.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서울: 아세아문화사.
- 박 실. 1984. 『增補 韓日外交秘史』. 서울: 井湖出版社.
- 배진수. 1998.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해양영토분쟁의 배경과 현황」. 이춘근 편. 『동아 시아해양분쟁과 해군력증강현황』.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p.121-140.
- 최장근. 1994. 「明治日本の領土擴張政策 - 獨島の島根縣編入を中心に - 」. 일본: 中央大學大學院 法學研究科.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7. 「近代日本の領土政策史研究 - 滿韓國境問題を中心として - 」. 일본: 中央大學大學院 法學研究科.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8. 『韓中國境問題研究 - 일본의 영토정책사적 측면에서 - 』. 서울: 백산자료원.
- _____. 2000(a). 「일본외교의 양면성에 관한 고찰 - 일한어업협정과 영토문제 - 」. 『日本學報』 제44집. 한국일본학회. pp.645-659.
- _____. 2000(b). 「어업협정과 독도 및 EEZ와의 관련성 - 일본외교의 정치문화적 특성에 서 고찰 - 」. 『日本學報』 제50집. 한국일본학회. pp.439-466.
- _____. 2003(a). 「현대일본정치의 아이덴티티 모색과 그 방향성 - 일본내셔널리즘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 」. 『日本學報』 제54집. 한국일본학회. pp.499-520.
- _____. 2003(b). 「러일국경문제의 결정요인 분석 - 아이누·러시아·일본, 그 외 국제관계의 정치역학적 측면에서 - 」. 『일본국가의 성장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제1회동아시아연구학술대회,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현대일본학회 주최. pp.55-76.
- 신용하. 1998. 「獨島·鬱陵島의 명칭변화의 연구 - 명칭 변화를 통해본 獨島의 韓國固有 領土 증명 - 」. 『韓國學報』 제91.92 합병호. 一志社. pp.2-60.
- _____.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이한기. 1969. 『韓國의 領土』.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河野康子. 1994. 『沖繩返還をめぐる政治と外交 - 日米關係史の文脈 - 』. 일본: 東京大学出版会.
- 毎日新聞社 編. 1952. 『対日平和条約』. 일본: 每日新聞社.
- 渡辺昭夫·宮里政玄 編. 1986.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일본: 東京大学出版会.